

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1999년 3월 12일

제안자 : 관광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일부 조항중 민원인에게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를 바로잡아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안 제3조(징수방법) 제1항중 “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”를 “이미 시험에 착수한 후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”로 함.

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(징수방법) 제1항중 “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”를 “이미 시험에 착수한 후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”로 함.

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징수방법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일체</u> -----	제3조(징수방법) ①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는 시험을 의뢰하는 자로 부터 징수하고 <u>이미 납부 한 수수료는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.</u>	제3조(징수방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이미 시험에 착수한 후 의뢰사항을 변 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.</u>